

소상공인 등의 창업·영업에 부담이 되는 규제법령 손본다

- 법제처, 사업자 교육 부담 완화, 시설·장비 기준 완화 등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법제 개선 추진
- 9월 5일부터 61개 법령 일괄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사업자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정 의무교육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독립된 사무실이나 자기 소유의 장비를 갖추지 않고 공동 사용이나 임차를 하는 경우에도 영업이 허용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61개 법령(7개 법률, 22개 대통령령, 32개 총리령·부령)*의 개정안을 9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붙임]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비대상 법령 목록 참조

법제처는 지난 2월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10차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방안 중 하나로 소상공인 등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개정은 규제를 완화한 신고의 확대, 보수교육 부담 완화, 시설·장비 기준 완화라는 세 가지 개선 방향과 관련된 법령을 전수조사하여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정비 법령을 확정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엄격하게 사업자를 관리할 필요성이 낮은 영업 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를 접수하면 행정청의 수리가 없더라도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사례) 계량기 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계량기의 종류, 제조국 등을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시·도지사는 7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시·도지사의 수리행위 없이도 적법한 신고만 하면 계량기 수입업을 할 수 있게 된다(「계량에 관한 법률」 제9조, 산업통상자원부).

둘째,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영업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을 미이수한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교육이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 부담이 완화된다.

(사례)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저수조 청소업자 등은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런데 해외 체류나 질병으로 입원해 있는 등 정해진 기간 안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교육을 연기할 수 있게 된다(「수도법 시행령」 제52조, 환경부).

셋째, 영업을 위해 일정한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경우 직접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차나 공동사용이 가능한 시설·장비에 대해서는 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된다.

(사례) 유압프레스기 등 설비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 임차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받는 것이 가능해진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국토교통부).

이완규 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안에는 소상공인 등이 창업하거나 영업을 할 때 부담이 되는 규제를 덜어, 경영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등의 노력에 보탬이 되는 내용들을 담았다” 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소상공인 등이 경영하기 좋은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국민참여입법센터,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담당 부서	법제처 법제개선조정과	책임자	과 장	김종훈	(044-200-6847)
		담당자	서기관	최혜경	(044-200-6846)



□ 자기완결적 신고 확대

연번	부처	법령명	대상 조문	내용
1	산업부	계량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제4항	계량기 수입업 신고·변경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자기완결적 신고로 전환
2	해수부	수산업법	제71조제3항·제4항	어구생산업·어구판매업 신고·변경신고·폐업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자기완결적 신고로 전환
3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3항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자기완결적 신고로 전환
4	문체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영화업자 신고·변경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자기완결적 신고로 전환
5			제57조제2항, 제60조, 제61조제2항·제3항	비디오물제작업 등 신고 및 변경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자기완결적 신고로 전환
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4항 제20조, 제21조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 신고·변경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자기완결적 신고로 전환
7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2항·제3항	인쇄사 신고·변경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자기완결적 신고로 전환
8		출판 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2항·제3항	출판사 신고·변경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자기완결적 신고로 전환
9	농림부	축산법 시행규칙	제47조의21제4항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자기완결적 신고로 전환
10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자기완결적 신고로 전환

□ 보수교육 부담 완화

연번	부처	법령명	대상 조문	내용
1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주택관리업자·관리사무소장·주택관리사등이 받아야 하는 교육을 집합교육, 인터넷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4조의3	교통안전담당자는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을 정해진 기간 안에 예외 없이 받도록 하고 있으나, 국외체류,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교육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3		궤도운송법 시행령	별표 4	궤도사업자·전용궤도운영자가 궤도운송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안전교육 실시의무 위반 시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차등 부과가 가능하도록 기준 마련
4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무 위반 시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차등 부과가 가능하도록 기준 마련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운수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무 위반 시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차등 부과가 가능하도록 기준 마련
6	농림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을 집합교육, 인터넷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7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3조의4	제조관리자·안전관리책임자 등이 받아야 하는 교육을 집합교육, 인터넷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8	농진청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치유농업시설 운영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을 집합교육, 인터넷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9	문체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을 집합교육, 인터넷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0	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공중위생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 의무 위반 시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차등 부과가 가능하도록 기준 마련
11	산업부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	광업권자·조광권자·광산근로자·광산안전관리 직원은 안전교육을 정해진 기간 안에 예외 없이 받도록 하고 있으나, 국외체류,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교육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12				광산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을 인터넷 교육의 방법으로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추가

연번	부처	법령명	대상 조문	내용
13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별표 2	제품·서비스 인증을 받은 자는 정기교육을 정해진 기간 안에 예외 없이 받도록 하고 있으나, 국외체류,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교육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14	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의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을 집합교육, 인터넷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3조·제84조	조리사·영양사가 받아야 하는 교육을 집합교육, 인터넷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6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시험검사책임자·품질보증책임자·시험검사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을 집합교육, 인터넷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7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위생용품제조업 등의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을 집합교육, 인터넷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8	해양경찰청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안전관리요원이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을 집합교육, 인터넷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9	해수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실무교육을 정해진 기간 안에 예외 없이 받도록 하고 있으나, 국외체류,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교육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20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을 집합교육, 인터넷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1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수중레저사업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 의무 위반 시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과태료를 부과 하고 있으나,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차등 부과 가능하도록 기준 마련
22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수중레저사업 종사자는 교육을 정해진 기간 안에 예외 없이 받도록 하고 있으나, 국외체류,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교육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23				수중레저사업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을 집합교육, 인터넷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4	환경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개인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수처리제 제조업자·정수기 제조업자·품질관리인은 품질관리교육을 정해진 기간 안에 예외 없이 받도록 하고 있으나,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교육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25			제36조의3	검사업무 담당 기술인력은 정기교육을 정해진 기간 안에 예외 없이 받도록 하고 있으나,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교육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연번	부처	법령명	대상 조문	내용
26				검사업무 담당 기술인력이 받아야 하는 교육을 집합교육, 인터넷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7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3조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기술인력·환경기술인·폐수처리업 종사 기술요원 등은 교육을 정해진 기간 안에 예외 없이 받도록 하고 있으나, 재해 발생,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교육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28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	환경기술인이 받아야 하는 교육의 기간을 5일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 교육 기간을 3일 이내로 완화
29	환경기술인은 교육을 정해진 기간 안에 예외 없이 받도록 하고 있으나, 국외체류,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교육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30		수도법 시행령	제52조	건축물 또는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저수조청소업자·일반수도사업자·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 등은 수도시설 관리 교육을 정해진 기간 안에 예외 없이 받도록 하고 있으나, 국외체류,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교육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31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정화업의 기술인력은 토양환경관리 교육을 정해진 기간 안에 예외 없이 받도록 하고 있으나, 국외체류,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교육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32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요원, 관리대행업자의 기술인력, 하수처리 분뇨수집·운반업자 등이 고용하고 있는 기술인력은 최초교육과 재교육을 정해진 기간 안에 예외 없이 받도록 하고 있으나, 재해 발생,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교육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33				운영요원·기술인력이 받아야 하는 교육을 집합교육, 인터넷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4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환경교육사는 보수교육을 정해진 기간 안에 예외 없이 받도록 하고 있으나, 국외체류,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교육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시설·장비 기준 완화

연번	부처	법령명	대상 조문	내용
1	고용부 여가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별표 2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지정요건 중 상담실, 편의 시설 등의 임차·공동사용 근거 마련
2	문체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제2항 제2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시설요건 중 사무소를 공동사용 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의 등록 기준 중 영업소, 장 비의 임차·공동사용 근거 마련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기준 중 영업소, 시 설·장비의 임차·공동사용 근거 마련
5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장비 요건 중 유압프레스 기 등의 임차 근거 마련
6			별표 18	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검사용기계·기구 의 임차 근거 마련
7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5	운전적성검사기관과 관제적성검사기관을 함께 지정 받으려는 경우 중복되는 기준 완화
8			별표 8, 별표 11의3, 별표 13의5	운전교육훈련기관, 관제교육훈련기관 또는 정비교 육훈련기관을 함께 지정받으려는 경우 중복되는 기 준 완화
9	해수부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요건 중 검사실, 분석기, 전기 로, 건조기 등 시설·장비의 임차 근거 마련
10			별표 5	천일염인증기관 지정요건 중 검사에 필요한 시설, 장비의 임차 근거 마련
11		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어장정화·정비업의 장비 기준 중 인양장비에 대한 임차 근거 마련
12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보안교육기관의 지정요건 중 강의실, 실습실에 대한 임차·공동사용 근거 마련
13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별표 2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요건 중 사무실, 실험실의 임차·공동사용 근거 마련
14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요건 중 회의실, 교육실 등 시설에 대한 임차·공동사용 근거 마련
15		선박안전법 시행령	별표 1	선체 두께측정업체의 지정기준 중 사무실, 측정장비에 대한 임차·공동사용 근거 마련
16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시설·장비 요건 중 보관시설, 운반차량, 처리장비에 대한 임차·공동사용 근거 마련
17			별표 1	수산부산물 처리업 중 수산부산물 수집·운반업과 중 간처리업을 함께 수행하려는 경우 중복되는 보관시 설을 추가로 갖추지 않도록 기준 완화
18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시설기준 중 검사장비에 대 한 공동사용 근거 마련

연번	부처	법령명	대상 조문	내용	
19	환경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정수기 수입판매업 시설기준 중 사무실, 보관시설에 대한 임차·공동사용 근거 마련	
20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 3	환경보건검사기관의 지정요건 중 실험실, 실험장비에 대한 임차·공동사용 근거 마련	
21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중 분석기, 측정기 등 장비에 대한 임차 근거 마련	
22			별표 2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중 사무실, 측정장비의 임차·공동사용(사무실에 한정) 근거 마련	
23		약취방지법 시행령	별표 1	기술진단전문기관 지정기준 중 사무실, 실험실, 측정장비에 대한 임차 근거 마련	
24	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2개 이상의 일반미용업을 함께하는 경우 시설·설비에 대한 공동사용 근거 마련	
25	농림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8의4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의 시설·장비 기준 중 사무실, 창고, 운반차 등에 대한 임차·공동사용 근거 마련	
26			별표 8의4, 별표 10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과 사후관리업을 겸업하려는 경우 중복되는 기준 완화	
27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식물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중 검사설비(핵산추출기 등)에 대한 임차·공동사용 근거 마련	
28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1	홍삼, 태극삼 또는 흑삼제조업의 시설기준 중 계량기, 수분측정기에 대한 임차·공동사용 근거 마련	
29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요건 중 강의실, 체험장 등에 대한 임차·공동사용 근거 마련	
30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교육훈련기관 지정요건 중 강의실 등 시설·장비에 대한 임차·공동사용 근거 마련	
31			별표 3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요건 중 강의실 등 시설·장비에 대한 임차·공동사용 근거 마련	
32		종자산업법 시행령	별표 5	종자업(채소, 과수, 식량작물 등)의 두가지 이상의 작물을 함께 생산하려는 경우 철재하우스 등 시설의 면적기준은 넓은 면적규모를 적용하고, 공통되는 장비는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기준 완화	
33		산림청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6	나무병원의 등록기준 중 사무실의 임차·공동사용 근거 마련